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428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3일

발 의 자 : 권영희, 채인목, 유 용,  
김상훈, 이현찬, 이광호,  
경만선, 이준형, 이호대,  
이세열 의원(10명)

## 1. 제안이유

- 사회투자기금 용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금융기관은 자부담금 매칭용자, 최대 3%이내 이자율 책정 등 사회투자기금 운영 정책에 협조하고 있음.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용자) 계획 중 코로나19 직·간접 및 확진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연 0.5%~1.5%) 용자지원이 포함되어 수행기관의 기존 수취이자(연 3%이내)에 대한 차액 보전이 필요. 수행기관이 운용하는 市용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사회적금융 생태계 지속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 (안 제4조제7호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2.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3.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사업 지원
4.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에 대한 지원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영자사업비 지원
7.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8.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공모사업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기금의 용도)</u> 기금은 시 관할지 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적경제기업</li> <li>2.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li> <li>3.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li> <li>4.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li> <li>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li> <li>6.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 용자사업비 지원</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용자 또는 보조</li> <li>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등</li> </ol>	<p><u>제4조(기금의 용도)</u>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li> <li>2.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li> <li>3.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li> <li>4.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에 대한 지원</li> <li>5.~6. (현행과 같음)</li> <li>7.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li> <li>8. (현행과 같음)</li> <li>9. (현행과 같음)</li> </ol>